붙임 1 표창대상, 기준 및 추천제한

1 표창대상

○ 연구산업 육성과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우리 부 소속 공무원(관서), 대외 기관·단체, 내·외국인 등

2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

구분	자격기준	추천제한
개인 **(공무원)**	▪ 실재직기간 3년 이상 ▪ 과기정통부 근속 2년 이상 (실근무기간만 적용)	▪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(근속표창 제외) ▪ 정부포상(모범공무원 포함)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▪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※ 경징계(견책·감봉)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천가능 (단,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제1~6호)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(주요비위)에 해당하면 추천불가) ▪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▪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▪ 공·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개인 **(일반국민)**	▪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(실근무기간만 적용)	▪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▪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▪ 산업재해, 불공정거래,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는 자 ▪ 부실학회 참석, 연구비 부당사용,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▪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,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단체 **(대외기관, 단체)**	▪ 해당 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 ▪ 국가와 사회발전, 공익제고 등 공이 큰 기관(단체)	▪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(동일한 유공이 아니더라도 수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수상 가능)
단체 **(관서)**	▪ 해당 분야 우수관서	▪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
※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,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

1 자격기준

○ **개인표창**

- **(공무원) 표창추천 마감일**(이하 '**추천일**'이라 함) **기준**으로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**근속 2년*** 이상인 자

  * **실근무기간만**을 **대상**(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, 휴직기간 등은 제외)으로 함

  ※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,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

- **(일반국민)** 추천일 기준, **해당 분야 근무경력 3년** 이상

○ **단체표창**

- **(대외기관·단체)** 추천일 기준, **해당 분야**에서 **2년 이상**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,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
- **(우리 부 소속 관서)** 해당 분야 우수관서

2 추천제한

○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**자격기준 준수**

○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가 원칙이나,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

○ 표창은 **동일한 공적**에 대하여 **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**

◇ **추천 부서 및 소속기관**에서는 표창추천 전에 엄밀히 조사하여 **부적격자(추천제한자)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**

◇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 결과, **공적내용**이 표창대상자로 **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표창대상에서 제외**되므로 **각 실.국 및 소속기관**에서는 **포상추천심의회(공적심의회)를 엄격하게 운영**하여 **적격자**를 **선정·추천**해야 함

※ **표창권자**가 **인정**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는 **표창기준** 및 **추천제한 기준**을 **적용하지 아니하며,** 추천부서에서는 **특수공적에 대한 장관 결재문서**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진행

○ **공무원 표창**

- **(재표창금지) 추천일 기준,**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**수상일**로부터 **3년**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▪ **추천일 기준,** 정부포상(모범공무원 포함) **수상일**로부터 **2년**이 경과하지 않은 자

※ 단, 근속표창을 수여하거나 근속표창 이후 다른 장관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 제외

- **징계 또는 불문경고**(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) **처분**을 **받은 자**

▪ 경징계(감봉·견책)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중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이 가능함

▪ 단, 징계(불문경고) 사유가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제4조제2항(제1~14호)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(주요비위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불가

<주요비위란>

「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)

1.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

1. 금전, 물품, 부동산,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
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(橫領), 배임(背任), 절도, 사기 또는 유용(流用)한 경우
   가.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예산 및 기금
   나.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예산 및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기금
   다.「국고금 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
   라.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
   마.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「물품관리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
   바.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
   사.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1의2.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

2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3.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

4.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

5.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

6.「공직자윤리법」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·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

7.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

7의2.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(소극행정은 제외한다)

8.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

9. 성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 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

10.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

11.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

12.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

13.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

14.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

- **징계의결 요구** 중이거나 **직위해제** 또는 **휴직** 중인 자
- **기포상공적과 유사**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- 기타 **사회적 지탄**을 받거나 민원 등 **사회적 물의**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(도박, 불륜, 사기, 강·절도, 상해, 갑질 등)

  * 감사원, 검찰, 경찰 등 조사・수사개시, 기소, 민・형사재판 계류, 언론보도

○ **국민 및 단체 표창**

- **(재표창금지) 추천일 기준,**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**수상일로부터 2년**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  ※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
- **단체표창**의 경우, 동일한 유공이 아니더라도 수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수상 가능
- 공·사생활을 통하여 **사회의 지탄**을 받거나 민원 등 **사회적 물의**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(단체 포함)
- 부실학회 참석, 연구비 부당사용, 부정적 연구세습 등 **연구부정**으로 인하여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

  ▪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(NTIS)에 **제재 중, 제재예정인 자,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**으로 등록된 경우 **추천 제외**

  ※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운영지원과(인사팀)에서 일괄 조회

- 아래에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

표창 대상	확인내용	확인방법
법인(단체) 대표 임원	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**산업재해**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**공표된 사업장**과 **그 임원**	**붙임2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**
법인(단체) 대표 임원	**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**(단체 포함) 및 **그 임원**	
개인	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**임금체불**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**체불사업주**	

붙임2 제한사유 조회방법

◆ **장관표창** 추천 제한사항 중 산업재해,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해 아래 **두 가지 방법 중 하나**를 선택하여 확인해야 함

※ 정부포상(훈장, 포장, 대통령·국무총리표창 이상)의 경우, 반드시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해야 함

① 각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조회

- 산업재해 :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(☎ 044-202-8916)
- 불공정행위 :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(☎ 044 - 200 - 4131)
- 임금체불주 :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(☎ 044-202-7526)

② 아래의 방법(소관부처 홈페이지 게재 등)을 통하여 확인

1.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

○ **최근 3년간** 위 법 제9조의2, 동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해 **명단이 공표된 사업장** 및 그 **임원**

○ **최근 3년간** 위 법 제10조, 동 시행령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**명단이 공표된 사업장** 및 그 **임원**

※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**뉴스·소식>공지사항>"산업재해" 검색**

(http://www.moel.go.kr/news/notice/noticeList.do)를 통하여 **최근 3년간**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

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뉴스·소식 > 공지사항



② “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” 검색 및 최근 3년간 게시물 확인



○ ‘임원’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※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
☞「사업자 등기부등본」,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http://dart.fss.or.kr, 회사별검색-사업장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
※ 감사(위원)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
※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
2.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임원

○ **최근 2년 이내 3회** 이상 **고발** 또는 **과징금** 처분*을 받은 **법인(단체 포함)** 및 그 **대표자**와 책임 있는 **임원은 추천을 제한**함

*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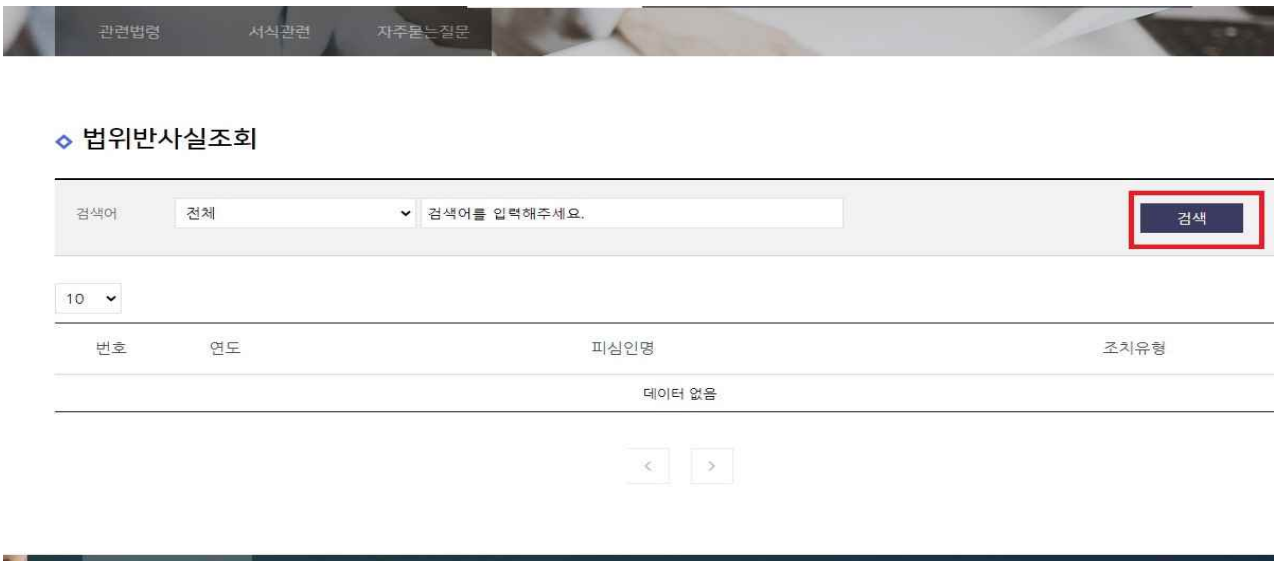
○ **최근 1년 이내 3회** 이상 **시정명령** 처분을 받은 **법인** 및 그 **대표자**와 책임 있는 **임원은 추천을 제한**함

※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**심결/법령 > 법위반사실 조회** : http://www.ftc.go.kr/www/violationLawList.do?key=298)를 통하여 확인

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> 심결/법령 > 법위반사실조회



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(최근 3년간)



3.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
○ **최근 3년간 위 법** 제43조의2, 동 시행령 제23조의2의 **체불사업주**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○ **최근 3년간** 위 법 제43조의3, 동 시행령 제23조의4의 **체불사업주**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

※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※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**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공개** : http://www.moel.go.kr/info/defaulter/list.do)를 통하여 확인

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공개



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



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(최근 3년간)

